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명칭이 충청북도립예술단에서 충청북도립교향악단으로 변경됨에 따른 교향악단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정원 변경(안 제3조3항)
 - 42명 이내 → 45명 이내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충청북도립예술단의 명칭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으로 바뀌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립교향악단의 정원을 교향악단 42명, 사무직원 3명에서 교향악단 45명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